

## 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

### 「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영덕군의 자생적 경제 기반 마련 및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「2026년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」을 시행합니다. 지역 특화 자원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여 영해면에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(예비)창업가 및 우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3월 9일

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센터장

#### I 청년창업 지원사업

##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영해면이 보유한 고유 자원 및 특화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,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후 사업종료일까지(협약체결일 ~ '27.12월 말(예정))
- 지원대상 :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(예비)청년창업자

- ◆ '예비창업자'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, **사업 공고일('26.2.25. 기준)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**를 의미
  - \* 사업자의 종류, 타 분야(업종)으로의 창업,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(**협약체결 전 사업자 등록 불가하며, 등록 시 선정 취소**)
- ◆ 예비창업자 판단은 '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' 기준으로 하며,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(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)

#### <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>

##### ① 온라인 발급

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(공인인증서 필요) → '민원증명'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신청하기 → 발급(신청 후 3시간 소요)

##### ② 오프라인 발급 :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발급

\*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(누락 시 불인정)

□ 지원규모 : 총 13명 내외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(2년간 최대 80백만원 이내)

- 초기 창업자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안착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 
(시제품 제작비, 재료비, 마케팅비, 지식재산권 취득비, 외주용역비, 인건비 「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」, 임차료 등)  
※ 비목별 한도는 별도 「세부관리기준」에 따름(관리지침 제7장 제40조~49조 준용)
-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%이상을 매칭

## 2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 :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(예비)청년창업자

- 만 19세~45세 이하 청년창업자(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)
- 만 19세~45세 이하 예비창업자(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)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
-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

□ 신청분야 : 지역특성 및 산업과 연계하여 창업이 가능한 산업 전 분야

## 3 세부 지원내용

지원항목		집행내역
인건비 (총사업비 30% 이내)	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
직접 사업비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	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대하는 비용
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 관련 비용
	외주 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
	홍보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사무용품비 소모품비	• 사업 관련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, 사무용품 (직접사업비 10% 이내)
	인테리어	•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
간접 사업비 (총사업비 6% 이내)	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	회의비	• 내·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비용
	교육 훈련비	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
※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
 -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

## 4 평가항목(안)

평가항목	주요내용	배점
창업의지 (30)	창업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	10
	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준비성	10
	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	10
창업아이템의 우수성 (30)	창업아이템의 우수성 (기능, 특징 등)	10
	기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	10
	창업아이템의 시장성	10
사업계획 타당성 (30)	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	10
	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	10
	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	10
기대효과 (10)	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실현(성장) 가능성	5
	지역 가치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과의 연계성	5
<b>합계</b>		<b>100</b>
<b>가점 (최대 20점)</b>	관외(타 지자체) 거주자 중 가족 단위 동반 전입 확약자	5
	영덕군 관내 생산 특산물 활용 비중 50% 이상 구성 시	5
	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(경계 10m이내) 창업시	5
	영덕군 내 거주기간 합산 3년 이상 지역청년 창업시	5

## II

##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

### 1

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영해면이 보유한 고유 자원 및 특화 브랜드를 기반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,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
-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후 사업종료일까지(협약체결일 ~ '27.12월 말(예정))
- 지원대상 :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(영덕군 외)에서 창업한 기업
- 지원규모 : 총 7개 내외
-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(2년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)
  - 타 지역 기업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전 지원금 지원(시제품 제작비, 재료비, 마케팅비, 지식재산권 취득비, 외주용역비, 인건비 「신규 채용 등 제한적 허용」, 임차료 등)
    - ※ 비목별 한도는 별도 「세부관리기준」에 따름(관리지침 제7장 제40조~49조 준용)
  - 지역으로 이전한 직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(대표를 제외한 1명 50%, 2명 100%)
  - 년차별 자금 지원 사업비 대비 선정업체 대응자금 10%이상을 매칭

### 2

### 신청자격 및 요건

-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 - 타지역(영덕군 외)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7년 미만 기업
  -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
  -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
- 신청분야 : 지역특성 및 산업과 연계하여 이전이 가능한 산업 전 분야

## 3

## 세부 지원내용

지원항목		집행내역
인건비 (총사업비 30% 이내)	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
직접 사업비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	기계장치 (공구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대하는 비용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 관련 비용
	외주 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
	홍보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	• 사업 관련 인쇄, 복사, 인화, 소모품, 사무용품 (직접사업비 10% 이내)
	인테리어	•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
간접 사업비 (총사업비 6% 이내)	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	회의비	• 내·외부 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의 회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비용
	교육 훈련비	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
※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최종 선정자에게 추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별도 안내 예정

## 4

## 평가항목(안)

평가항목	주요내용	배점	비고
창업의지 (30)	창업 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	10	
	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준비성	10	
	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	10	
사업아이템의 우수성 (30)	사업아이템의 우수성 (기능, 특징 등)	10	
	기존 경쟁제품과의 차별성	10	
	사업아이템의 시장성	10	
사업계획 타당성 (30)	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	10	
	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현실성 및 타당성	10	
	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	10	
기업실적 (10)	매출 성장률*	5	재무제표 필수제출
	고용 성장률**	5	4대보험가입자 명부 필수제출
<b>합계</b>		<b>100</b>	
<b>가점 (최대 5점)</b>	최근 2년 이내 1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 보유		<b>3</b>
	최근 2년 이내 정부·지자체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		<b>2</b>

\* 매출 성장률 = [(‘24년 월평균 매출액-’23년 월평균 매출액)/’23년 월평균 매출액]\*100

① 기업 매출성장률 배점표(‘23년도 매출액이 0원이 아닌 경우)

성장률	50% 미만	50% 이상 100% 미만	100% 이상	비고
배점	1	3	5	증빙 누락시 0점

② 기업 매출성장률 배점표(‘23년도 매출액이 0원인 경우)

’24년 매출액	0원	0원 초과 1억원 미만	1억원 이상	비고
배점	1	3	5	증빙 누락시 0점

\*\* 고용성장률 = [(‘24년 월평균 고용인원-’23년 월평균 고용인원)/’23년 월평균 고용인원]\*100

성장률	0% 이하	0% 초과 20% 미만	20%이상	비고
배점	1	3	5	증빙 누락시 0점

### III

## 공통사항

### 1

## 신청 및 접수

□ 공고기간 : '26. 3. 9.(월) ~ '26. 3. 28.(토)

○ 신청기간 : '26. 3. 9.(월) ~ '26. 3. 28.(토), 16:00 ※ 기한 엄수

#### ◆ 신청·접수 마감 유의사항

본 사업은 지정된 공식 이메일 채널로만 접수 가능하며, 최종 제출이 완료된 서류 일체는 임의로 삭제 및 반환이 불가함

□ 신청서 교부

- 영덕군청 홈페이지(유관기관 소식) ([https://www.yd.go.kr/?page\\_id=239](https://www.yd.go.kr/?page_id=239))
-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(공지사항) (<https://yd24.or.kr/#home>)

□ 신청방법 :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&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단 ([kmri2020@daum.net](mailto:kmri2020@daum.net)) 온라인 제출

#### ◆ 신청 시, 유의사항

- 1)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**본인 신청**이 원칙
- 2)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은 **신청마감 기한까지 수정, 재제출 가능**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명	서식	비고	
필수	1	사업계획서	서식1	파일 첨부
	2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2	파일 첨부
	3	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서식3	파일 첨부
	4	대응자금 부담 협약서	서식4	파일 첨부
	5	신분증(대표자) 사본	-	파일 첨부
해당 시	5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6	법인등기부등본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7	재무제표(최근 3개년)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8	4대 보험가입자 명부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9	정관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10	주주명부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	11	회사 소개서 또는 IR(기업설명회)자료	-	파일 첨부 후 원본 제출
선택	12	가점 증빙자료	-	사업계획서에 서류 첨부

## 2

##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\* 선정평가 일정,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### < 선정평가 추진절차 >

서류평가	발표평가	최종 선정	결과 통보
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이전 발표 및 질의응답	교육 대상자 선정 확정 (1.5배수 내외 선정)	평가결과 최종 통보
'26. 3월 말	'26. 4월 초	'26. 4월 중순	'26. 4월 중순

◆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지원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□ 평가방법

①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(가점 포함)하여, 발표 평가 대상자 확정(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)

\* 서면으로 진행되며,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(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불가)

② (발표평가) 신청자(예비창업자 및 이전기업) 역량, 창업 아이디어,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,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발표평가는 신청자(예비창업자 및 이전기업 사업 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실시

\*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 (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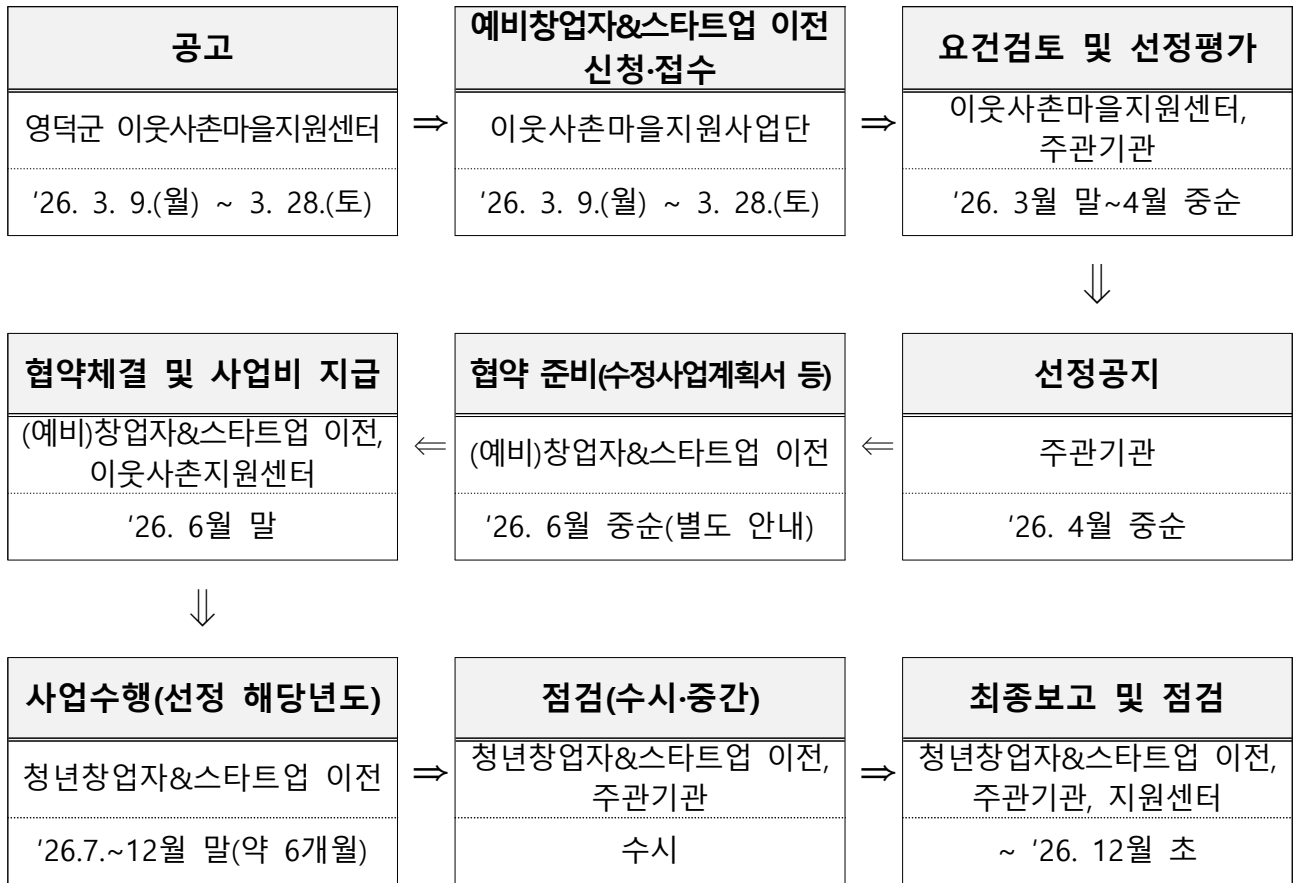
□ 최종 선정

○ (최종선정)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,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, 최종선정자별 지원금(사업계획서 검토 후 업종별 차등 지급)을 배정

\* 지원금은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지급되며, 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사업고도화 프로그램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잔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○ (선정통지) 개별통보

### □ 사업 운영일정(안)



## 3 유의사항 및 문의처

### □ 유의사항

- (접수 마감 주의)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청환경(PC, 인터넷 등)에 따라 마감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서를 제출 필요
- (신청자 명의 일치)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(사업자 등록)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,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(부정행위 제재)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·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,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
- (관련 규정 준수)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(사업자 등록 시점 제한) 동 사업 선정된 자는 반드시 협약체결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,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 시 선정이 취소됨(단, 예비창업자에 한함)
- (사후 관리 의무)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(사업 중도 포기 제재)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(중복 수혜 금지) 사업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부처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동시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
  - \* 단, 창업(사업자등록)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제품 제작지원, 마케팅 등 지원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
- (이주 및 사업장 유지 의무)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영해면 내로 주소지(사업장 포함)를 이전해야 하고,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청년창업&스타트업 이전 사업지원단 :  
(kmri2020@daum.net)

분야	대상업종
금융부동산	금융(환전소, 투자, 대부업 등) 및 보험업, 부동산업
요식업	음식점업 (단,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)
숙박업	숙박 (단, 영해면 콘텐츠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제외)
유흥접객	무도장, 유흥접객영업(주점 등)
레저	골프장, 스키장, 갠블링, 베틀업
기타	프렌차이즈 및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분야 (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)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 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 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④ 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또는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※ 단, 본 사업의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예외로 함  
 특히, 의성군 안계면, 영천시 금호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신청 불가.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

⑤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(기업)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  
 ※ 단, 본 사업의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신청 기업은 예외로 함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(기업)

⑨ 기타 관리기관, 전담기관, 주관기관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(기업)

⑪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신청자

⑫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능한 자(기업)